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92
----------	------

발의년월일 : 2021. 01. 15.

발의의원 : 이영애, 김재우, 배지숙
강성환, 김동식, 김대현
김원규, 김지만, 박갑상
안경은, 윤기배, 이태손
전경원, 하병문, 홍인표
의원(이상 15명)

1. 제안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함으로 대상자 선정에 혼란을 방지함(안 제4조)
- 마.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정의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8조)
- 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모범적인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저. (생략)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허. (생략)

2.~7. (생략)

(붙임 2)

타 지자체 유사조례 현황

조례명	소관부서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충청북도 저소득 범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행정국 민간협력공동체과
전라남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